

## □ 대외기술지원지침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사유
<p>제2장 비축원자재 확인 업무</p> <p>-</p>	<p><b>제2장 비축원자재 확인 및 품질검사 업무</b></p> <p><b>제7조(관련법규)</b> &lt;신설 2017. 0.00.&gt;</p> <p>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법규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방위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, 제7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5조, 제47조, 제49조, 제50조</li> <li>2.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70조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축원자재 확인 및 품질검사 업무로 용어 명확화</li> <li>- 비축원자재 확인 업무의 관련법규 조항 신설</li> </ul>
<p><b>제6조(적용범위)</b></p> <p>이 장은 「방위사업법 시행규칙」에 의거 수행하는 방산물자 생산용 비축원자재 <b>관리</b> 업무에 적용한다.</p>	<p><b>제8조(적용범위)</b></p> <p>이 장은 「방위사업법 시행규칙」에 의거 수행하는 방산물자 생산용 비축원자재 <b>확인 및 품질검사</b> 업무에 적용한다.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축원자재 확인 및 품질검사 업무로 용어 수정(명확화)</li> </ul>
<p>-</p>	<p><b>제9조(비축용 원자재 종류 및 수량 확인)</b> &lt;신설 2017. 0.00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를 따른다.</li> <li>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확인을 위하여 센터는 업체에서 제시한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 및 원자재의 단위별 소요량 적정성 검토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관련 검토결과를 품질경영운영실 및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한다.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축원자재 종류 및 수량 확인 관련 조항 신설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9조(품질확인 활동)</b>  비축원자재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<b>1. 수입원자재 품질확인</b></p> <p>가. 비축용 원자재는 수입 후 최초 품질확인을 해야 한다. 정부 비축용 원자재는 방위사업청의 품질확인 요구에 의거 실시하고, 업체 비축용 원자재는 업체의 품질확인 의뢰 접수 시 관련업체의 책임하에 품질확인을 실시하며, 각 센터는 품질을 확인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(중략)~</p> <p>다. 각 센터는 품질확인 결과를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-1호 서식으로 <b>업체에 통보한다.</b> &lt;개정 2015.10.13.&gt;</p>	<p><b>제11조(품질검사 활동)</b>  비축원자재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<b>1. 비축용 원자재 규격 및 품질검사 &lt;개정 2017. 0.00.&gt;</b></p> <p>가.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 <p>(1) 비축명령에 따라 방산업체가 비축 원자재를 최초로 비축하는 경우</p> <p>(2)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원자재를 사용 후 보충하는 경우</p> <p>(3) 방위사업청에서 정부비축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(4) 정부비축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반환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한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(중략)~</p> <p>다. 각 센터는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,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-1호 서식에 따라 <b>요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/b> &lt;개정 2015.10.13.&gt;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	<p>- 명확한 용어(품질확인 → 품질검사)로 수정</p> <p>- 1호 및 3호는 내용면에서 유사성이 많아 하나의 조항으로 통일하고, 문구 수정</p> <p>- 문구수정 및 통보부서(업체 → 요청기관) 명확화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<p>2. 정기점검 가. 정부 비축원자재 점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(중략)~</p> <p>(3) 결과통보 ~(중략)~ 점검결과는 점검팀장 책임 하에 종합하여 점검완료 후 10일 이내에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하고, 품질경영운영실은 반기 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한다.</p> <p>나. 업체 비축원자재 점검 ~(중략)~ (3) 센터는 매 반기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점검결과를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하고(별지 제2-3호 서식), 품질경영운영실은 반기 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한다. &lt;개정 2015.10.13.&gt;</p>	<p>2. 정기점검 가. 정부 비축원자재 점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(중략)~</p> <p>(3) 결과통보 ~(중략)~ 점검팀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점검결과를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하고, 품질경영운영실은 점검팀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한다.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 <p>나. 업체 비축원자재 점검 ~(중략)~ (3) 센터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점검결과를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하고(별지 제2-3호 서식), 품질경영운영실은 센터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한다. &lt;개정 2015.10.13.&gt;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	<p>-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방산업체의 비축현황 통보일정과 맞추어 점검 추진</p>
<p>3. <del>대부품, 반환품 및 보충품 품질확인</del> ~(중략)~</p>	<p>3. &lt;삭제&gt;</p>	<p>- 3호는 1호로 통합되어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업무</b></p> <p><b>제10조(관련법규)</b>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법규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66조, 제72조, 동시행규칙 제42조의 2</li> <li>2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, 동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 &lt;개정 2015.10.13.&gt;</li> <li>3.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(국방부) 제128조 내지 제132조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 업무</b></p> <p><b>제12조(관련법규)</b>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법규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</li> <li>2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48조,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 &lt;개정 2015.10.13.&gt; &lt;개정 2017. 0.00.&gt;</li> <li>3.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(국방부) 제128조 내지 제132조</li> <li>4. 군용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 &lt;추가 2017. 0.00.&gt;</li> <li>5. 도로교통법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제56조 &lt;추가 2017. 0.00.&gt;</li> </ol>	<p>— 정확한 법률명의로 수정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 및 관련법규(군용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, 도로교통법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제56조) 추가</p>
<p><b>제11조(적용범위)</b> ②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66조에 의거 <b>군수용 화약류</b>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<b>제13조(적용범위)</b> ②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66조에 의거 <b>군용 총포·도검·화약류</b>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.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	<p>— 용어 명확화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12조(운반신고)</b></p> <p>① 총포·도검·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3-1호 서식에 의거 해당센터로 <b>1 근무일</b>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5.10.13.&gt;</p>	<p><b>제14조(운반신고)</b></p> <p>① 총포·도검·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 3-1호 서식에 의거 해당센터로 <b>2 근무일</b>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<b>다만, 다음 각 호과 같이 업체가 2근무일 전까지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1근무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.</b> &lt;개정 2015.10.13.&gt; &lt;개정 2017. 0.00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군의 긴급한 시험일정 통보</li> <li>2. 시험 후에 잔여탄약 등을 긴급히 반납 또는 운반</li> <li>3.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운전자를 긴급히 변경할 경우 등</li> </ol>	<p>- 군용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 제10조 2항에 따라 2근무일로 개정 및 긴급한 경우 1근무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</p>
<p><b>제13조(신고필증 발급)</b></p> <p>② 해당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운반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에 기록하여 발급한다. &lt;개정 2015.10.13.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 (중략) ~</p> <p>6. 기타 방위사업법, <b>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</b>,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, <del>국방탄약 및 폭발물 호송지침</del> 등 관련 법 및 제 규정 준수</p>	<p><b>제15조(신고필증 발급)</b></p> <p>② 해당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운반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에 기록하여 발급한다. &lt;개정 2015.10.13.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 (중략) ~</p> <p>6. 기타 방위사업법, <b>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b>,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 및 제 규정 준수 &lt;개정 2017. 0.00&gt;</p>	<p>- 정확한 법률명으로 수정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 및 국방부 훈령에서 삭제된 지침(국방탄약 및 폭발물 호송지침)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-	<p><b>제16조(운반절차 이행) &lt;신설 2017. 0.00&gt;</b></p> <p>① 해당업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671조2 2항(운반허가요건) 및 도로교통법 제56조(고용주 등의 의무)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군용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군용 총포 등 운반차량의 안전성</li> <li>2. GPS·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</li> <li>3. 운반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안전교육</li> </ol> <p>② 해당업체가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운반하는 경우 업체대표는 미리 운전자로부터 안전운전 서약서(별지 제3-5호) 및 운전자 건강상태 점검시트(별지 제3-6호)를 제출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센터는 해당업체의 운반절차 이행 여부를 관리·감독 시 업체가 운반신고 내용과 달리 운반하였거나, 운반신고 없이 운반한 경우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운영실 및 방위사업청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한다.</p>	<p>- 방위사업관리규정 671조2 2항 운반허가요건 및 도로교통법 제56조(고용주 등의 의무)와 관련된 조항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-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총포·도검류 폐기 업무 &lt;신설 2017. 0.00.&gt;</p> <p>제19조(관련법규) ~ (중략) ~</p> <p>제20조(군용 총포·도검류 폐기 승인 대상) ~ (중략) ~</p> <p>제21조(군용 총포·도검류 폐기 절차) ~ (중략) ~</p> <p>제22조(군용 총포·도검류 폐기 기준) ~ (중략) ~</p> <p>제23조(군용 총포·도검류 폐기 관리) ~ (중략) ~</p> <p>제24조(기타) ~ (후략)</p>	<p>-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(군용총포등의 폐기) 1호에 의거 군용 총포·도검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폐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 허가를 받은 후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군용 총포·도검류 관련 폐기 업무 신설 (세부내용은 개정안 참조)</p>

현행

【별지 제3-1호 서식】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 신고서

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 신고서

품명	혼합그늘저장 (위험등급수)	단위	수량	운반목적	운반구간	
					에서	로
발송자	업체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 소:					
운반구간 및 경유지	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년월일 :					
운반책임자	성명		생년월일			
호송자 성명	외 명		운반 기간	년 월 일	시부터	시까지
차량 및 차량번호	외 대					
도착지						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대 표 이 사 (인)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비서류 1. 방위사업청의 운반 허가 문서 2. 운반의 일시·통로·방법 및 총포 등의 성능과 적재방법 3.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 <small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</small>						

개정안

【별지 제3-1호 서식】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 신고서 <개정 2017. 0.00>

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 신고서

품명	혼합그늘저장 (위험등급수)	단위	수량	운반목적	운반구간	
					에서	로
발송자	업체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 소:					
운반구간 및 경유지	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년월일 :					
운반책임자	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년월일					
운송업체 및 운전자	운송업체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:		생년월일			
호송자 성명	외 명		운반 기간	년 월 일	시부터	시까지
차량 및 차량번호	외 대					
도착지						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대 표 이 사 (인)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비서류 1. 방위사업청의 운반 허가 문서 2. 운반의 일시·통로·방법 및 총포 등의 성능과 적재방법 3.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 <small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</small>						

※ 운전자는 모두 기록바랍니다. (운전자가 다수인 경우 뒷면에 리스트로 첨부가능)

사유

- 군용·총포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절차 개선지시((방산지원과-4240('16. 9. 5.))에 따라 신고서에 운송업체 및 운전자 항목 추가

현행

【별지 제3-2호 서식】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

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

발급번호 :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

품명	단위	수량	운반목적	운반구간	
				에서	로
발송자	업체명 : 주소 : 대표자 : 생년월일 :				
운반구간 및 경유지					
운반책임자 성명	성명 : 생년월일 :				
효송자 성명	의 0명	운반 기간	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까지		
차량 및 차량번호	의 0대				
준수(의무)사항	※ 운반책임자의 준수사항 1. 화약류 수송 중 유해요소 발견 시 시정 2. 지정된 일시 및 수송경로에 한하여 운행 3. 운행 중 부당한 채류행위 금지 4. 정차 또는 휴식 간 경계 5. 우발사고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군부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협조 6. 기타 방위사업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, 방위산업 보안업무령, 국방 탄약 및 폭발물 효송지침 등 관련 법 및 제 규정 준수				
※ 발급근거 -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66조 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					

국방기술포럼 00팀장 인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개정안

【별지 제3-2호 서식】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 <개정 2017. 0.00>

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

발급번호 : 총포·도검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

품명	단위	수량	운반목적	운반구간	
				에서	로
발송자	업체명 : 주소 : 대표자 : 생년월일 :				
운반구간 및 경유지					
운반책임자	성명 : 생년월일 :				
운송업체 및 운전자	운송업체 :	성명 :			
효송자 성명	의 0명	운반 기간	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까지		
차량 및 차량번호	의 0대				
준수(의무)사항	※ 운반책임자의 준수사항 1. 화약류 수송 중 유해요소 발견 시 시정 2. 지정된 일시 및 수송경로에 한하여 운행 3. 운행 중 부당한 채류행위 금지 4. 정차 또는 휴식 간 경계 5. 우발사고 발생 시 현장 수습 및 군부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협조 6. 기타 방위사업법,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방위산업 보안업무령 등 관련 법 및 제 규정 준수				
※ 발급근거 -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66조 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					

국방기술포럼 00팀장 인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※ 운전자는 모두 기록바랍니다. (운전자가 다수인 경우 뒷면에 리스트로 첨부가능)

사유

- 군용·총포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절차 개선지시((방산지원과-4240( '16. 9. 5.))에 따라 신고필증 발급 서식에 운송업체 및 운전자 항목 추가

현행	개정안	사유
-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별지 제3-5호 서식】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 &lt;신설 2017. 0.00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</b></p> <p>본인은 _____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은 운송기간( _____ ~ _____ )동안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.</li> <li>본인은 항상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에 유의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물품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.</li> <li>본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(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), 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), 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)를 준수하며 물품수송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</li> </ol> <p>상기 사항을 엄숙히 이행하겠으며, <u>피이행으로</u> 인한 사고 발생시,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<u>관련 법과</u>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 운송업체 : _____ ○ 성 명 : _____ (인) ○ 생년월일 : _____ ○ 차량번호 : _____ ○ 연 락 처 : _____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_____년 _____월 _____일</p>	<p>- 군용·총포·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절차 개선지시((방산지원과-4240('16. 9. 5.))에 따라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 신설</p>

현행

개정안

사유

【별지 제3-6호 서식】 운전자 건강상태 점검시트 <신설 2017. 0.00>

운전자 건강상태 점검시트

점검일자		차량번호	
호 송 자	(서명) 운송업체	운전자	(서명)

순서	점검내용	점검결과		비 고
		有	無	
1	평소 기운이 없고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.			
2	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.			
3	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낀다.			
4	마비 증상, 손발이 찌릿찌릿한 느낌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.			
5	관절통, 두통, 소화불량, 어지럼증 등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.			
6	불면증 등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다.			
7	식욕 및 식사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든다.			
8	자기 옆면에 잘 빠지며, 음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.			
9	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.( )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.			
10	음주로 인하여 당일 운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?			
11	건강상태가 당일 운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?			

▶ 점검 결과 :

- 군용·총포·화약류  
운반신고필증 발급절  
차 개선지시((방산지  
원과-4240( '16. 9.  
5.))에 따라 운전자  
건강상태 점검시트  
신설

현행	개정안	사유																		
-	<p><b>【별지 제4-1호 서식】 총포·도검류 폐기 계획서 &lt;신설 2017. 0.00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총포·도검류 폐기 계획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신고 근거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일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방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사유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작업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작업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</td> </tr> <tr> <td>폐기책임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</td> </tr> </table> <p>□ 구비서류 1. 방위사업청외 폐기 허가 문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size: small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종))</p>	신고 근거		폐기 대상		폐기 일시		폐기 장소		폐기 방법		폐기 사유		폐기 작업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		작업자	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	폐기책임자	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	<p>- 방위사업법 시행 규칙 제43조(군용총 포등의 폐기) 1호에 의거 군용 총포·도 검류 관련폐기 업무 에 따른 총포·도검 류 폐기 계획서 신설</p>
신고 근거																				
폐기 대상																				
폐기 일시																				
폐기 장소																				
폐기 방법																				
폐기 사유																				
폐기 작업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					
작업자	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																			
폐기책임자	소속    직급    성명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<p><b>【별지 제42호 서식】 총포·도검류 폐기 확인서 &lt;신설 2017. 0.00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총포·도검류 폐기 확인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신고 근거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폐기 대상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일시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폐기 장소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폐기 방법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구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폐기 전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폐기 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진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/div> </td> </tr> <tr> <td>작업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명</td> </tr> <tr> <td>폐기책임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명</td> </tr> <tr> <td>입회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명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00업체 대표이사 000      서명 또는 직인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 <small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종))</small> </td> </tr> </table>	신고 근거					폐기 대상					폐기 일시					폐기 장소					폐기 방법					구분	폐기 전	폐기 후			사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/div>				작업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폐기책임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입회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00업체 대표이사 000      서명 또는 직인					<small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종))</small>					<p>-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(군용총포등의 폐기) 1호에 의거 군용 총포·도검류 관련폐기 업무에 따른 총포·도검류 폐기 확인서 신설</p>
신고 근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 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 일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 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 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폐기 전	폐기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 height: 100px;"></div> 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업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책임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회자	소속	직급	성명	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00업체 대표이사 000      서명 또는 직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small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종))</smal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